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0일 심현정 의장이 발의하고, 2023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있어 형식적인 자료 제출 및 심사를 방지하고자 집행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심사의 판단 근거인 제출서류 목록을 명확히 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안 제출 시 필요서류로서 ‘위탁계획 관련 서류’를 삭제

(안 제7조 관련)

나. 제7조의2(민간위탁 동의안)를 신설하여

의회 동의안의 제출서류로서 각 10호를 규정(안 제7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있어

형식적인 자료 제출 및 심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로써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추가하고 정비한 ‘민간위탁 동의안’ 조문을 신설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의 실효성을 엄밀히 판단하여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민간 위탁을 방지하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